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후단 중 “정보통신망”을 “정보통신망(「전자정부법」 제21조에 따른 민간등의 서비스를 활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9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가구소득분위”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30 이하의 범위에서 교육부장관이 학자금대출 이자의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가구소득분위를 말한다”를 “가구소득분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 제1호 및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의4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여 우선적 학자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구소득분위에 해당하는 경우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30 이하의 범위에서 교육부장관이 학자금대출 이자의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가구소득분위에 해당하는 경우

② 법 제16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학생 가구의 소득인정액”이란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의4제1항에 따른 소득과 재단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대학생 가구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8조제2항”을 “법 제16조2제2항”으로, “채무자의 연간소득금액”을 “연간소득금액”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제2조제3호 및 제4호”를 “제2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로 한다.

제1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인하여 상환의무를 부담하게 된”을 “인한 상환의무 부담으로 의무상환액을 고지받은”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본문 중 “인하여 상환의무를 부담하게 된”을 “인한 상환의무 부담으로 원천공제금액을 통지받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경우:”를 “경우(제2항제1호의 경우로 한정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제2호 중 “제4호”를 “제5호”로 한다.

4. 법 제18조제7항제5호에 해당하는 채무자: 산정기초소득금액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계액이 해당 의무상환액의 산정에 적용된 상환기준소득보다 적고 거주 지역이 재난사태가 선포되거나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어 2년이 경과하지 않으면서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 가. 제10조제1항제4호에 따른 퇴직소득금액

나. 제10조제1항제5호에 따른 양도소득금액
제33조제1항 중 “3을”을 “2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12를”을 “5
를”로 한다.
제35조의2제3항 중 “제6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을 “제6조의2제2
항·제3항 및 제5항을”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3조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난사태 또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거주자에 대한
상환유예 적용례) 제10조의2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
이후 재난사태 또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연체금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 이
후 고지하는 의무상환액을 연체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7조(채무자의 신고의무) ①·② (생략)	제7조(채무자의 신고의무)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 제2항 및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신고는 취업후학자금상환 정보통신망을 통한 전자적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는 취업후학자금상환 정보통신망에 신고 내용이 입력된 때에 신고된 것으로 본다.	③ ----- ----- ----- ----- ----- 정 보통신망(「전자정부법」 제21 조에 따른 민간등의 서비스를 활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④·⑤ (생략)	④·⑤ (현행과 같음)
제9조(이자의 면제) 법 제16조의2 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u>가구소득분위</u> ”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30 이하의 범위에서 교육부장관이 학자금대출 이자의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u>가구소득분위</u> 를 말한다.	제9조(이자의 면제) ① ----- ----- ---- <u>가구소득분위</u>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를 말한다.
<신설>	1.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의4 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 하여 우선적 학자금 지원이 필

<신 설>

<신 설>

제10조(연간소득금액 등) ① 법 제1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자의 연간소득금액”이란 「소득세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같은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비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은 제외한다)을 기초로 산정하는 다

요하다고 인정하는 가구소득분위에 해당하는 경우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30 이하의 범위에서 교육부장관이 학자금대출 이자의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가구소득분위에 해당하는 경우

② 법 제16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학생 가구의 소득인정액”이란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의4제1항에 따른 소득과 재단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대학생 가구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제10조(연간소득금액 등) ① 법 제16조제2항-----

----- 연간소득금액-----

음 각 호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1. ~ 5. (생략)

② (생략)

③ 법 제1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하 “상환율”이라 한다)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1. (생략)

2. 제2조제3호 및 제4호의 사람이 대출을 실행한 경우: 100분의 25

3. (생략)

④·⑤ (생략)

제10조의2(채무자의 의무상환액 상환 유예) ① 법 제18조제7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채무자가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경우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3. (생략)

<신설>

-----.

1. ~ 5.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

--.

1. (현행과 같음)

2. 제2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

--

3. (현행과 같음)

④·⑤ (현행과 같음)

제10조의2(채무자의 의무상환액 상환 유예) ① -----

----- 제5호-----

-----.

1. ~ 3. (현행과 같음)

4. 법 제18조제7항제5호에 해당하는 채무자: 산정기초소득금액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계액이 해당 의무상환액의 산정에 적용된 상환기

② 법 제18조제7항에 따른 상환 유예(이하 “상환유예”라 한다)를 신청하려는 채무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합소득금액 중 사업소득금액(「소득세법」 제144조의2에 따른 사업소득금액은 제외한다)으로 인하여 상환의무를 부담하게 된 경우: 채무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

2.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근로소득금액 또는 「소득세법」 제144조의2에 따른 사업소득금

준소득보다 적고 거주 지역이 재난사태가 선포되거나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어 2년이 경과하지 않으면서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가. 제10조제1항제4호에 따른

퇴직소득금액

나. 제10조제1항제5호에 따른

양도소득금액

② -----

-----.

1. -----

-- 인한 상환의무 부담으로의 무상환액을 고지받은 -----

2. -----

액으로 인하여 상환의무를 부담하게 된 경우: 원천공제금의무자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다만, 법 제24조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서의 제출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내에 하여야 한다.

1. 의무상환액이 고지된 경우: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납부기한의 3일 전까지

2. (생략)

④ (생략)

⑤ 상환유예 기간은 상환유예 신청일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난 날이 속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로 하며, 상환유예 전의 납부기한은 상환유예 기간이 만료되는 날로 연기된다.

1. (생략)

2. 법 제18조제7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상환유예를 받은

----- 인한 상환의무 부담으로 원천공제금액을 통지받은

-----.

-----.

③ -----

-----.

1. ----- 경우(제2항제1호의 경우로 한정한다):

2.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⑤ -----

-----.

1. (현행과 같음)

2. ----- 제5호-----

경우: 2년 ⑥ ~ ⑧ (생략) 제33조(연체금) ① 법 제3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이란 100분의 3을 말한다. ② 법 제3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이란 1천분의 12를 말한다. 제35조의2(전자송달의 신청 등) ①·② (생략)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전자송달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조의 2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 ⑥ ~ ⑧ (현행과 같음) 제33조(연체금) ① ----- ----- ----- 2를 -----. ② ----- ----- 5를 -----. 제35조의2(전자송달의 신청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제6조의 2제2항·제3항 및 제5항을 --.
---	--

〈 의안 소관 부서명 〉

교육부 청년장학지원과	
연 락 처	(044) 203 - 6268